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코너에서는 정보제공업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과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Q&A 형식으로 제공한다. **조소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Q** 특정 분야의 관련 학술지, 세미나 자료집 및 기타 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을 통신망을 통해 정보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 및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A**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요구됩니다. 학술지, 세미나 자료집 및 기타 간행물에 수록된 논문 역시 저작권의 대상으로서, 이를 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허락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학술지 등 기타 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저자이며, 이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논문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자의 이용허락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제 및 배포권과 같은 저작권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이므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의 권한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특히 저자가 저널에 논문을 기고하는 경우 출판계약에 의해 논문에 대한 저작권권이 출판사에게 양도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논문에 대한 이용허락 주체는 출판사가 됩니다. 특히, 외국 학술지의 경우 기고된 논문은 거의 학술지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으므로 이의 이용을 위해서는 출판사의 이용허락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면, 학술지 등 기타 저널의 논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출판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용허락의 주체가 저자나 혹은 출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래에 학술지 등의 출판사는 기고 논문에 대하여 저작권권 포괄 양도의 표준 약관을 마련,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출판사의 이용허락을 얻어야만 논문 제공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논문에 대한 저작권권이 출판사에게 없고 개별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면 이들 저작자 모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논문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Q** A가 동일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B의 DB명과 유사한 DB명을 사용함으로써 DB 출처에 혼동을 야기하고 B의 신용 훼손 및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A의 DB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명칭의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해결책으로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법에 의한 경우에 대해 언급하면, 만일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타인의 명칭에 대한 모방행위를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적 등의 제호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DB의 명칭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고려할 수 있는데, 단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데이터베이스 상품 자체에 대한 상표를 등록받았든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유통에 대한 서비스를 등록받은 경우에만 타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B가 상표(혹은 서비스표)를 등록받은 사실이 있다면 타인의 유사한 명칭의 사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가지 유념할 것은 B의 명칭이 그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는 성질표장으로서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혼한 명칭으로 인식될 경우(ex. 유망사업정보)에는 상표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상표(혹은 서비스표)를 등록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해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호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B의 데이터베이스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A의 행위가 위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B는 A에게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용회복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데이터베이스명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인지', '혼동을 일으키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구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칭에 대한 침해에 대해 확실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법률상담 문의는 <SYCHO@DPC.OR.KR>로 하면 된다.